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규제심사 대상에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완화 포함〉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51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완화 포함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9.
3. 회 부 일 : 2025.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완화 포함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2. 재난·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 3.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 폐지 또는 완화의 대상·범위·방법

현행	개정안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항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로 본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24조(기능)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 분석을 포함한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¹⁾,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 제19조²⁾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기존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폐지 또는 개선)³⁾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없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체 정비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면 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이며⁴⁾,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과도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자칫 생명, 안전 또는 환경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①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② 재난·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 ③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규제,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 신설·강화를 위한 절차와 유사하게,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 폐지·완화의 필요성·적정성 및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비교·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정비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⁵⁾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기존 규제를 자체 정비(폐지 또는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장의 자체 정비 대상과 개정안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환경’ 관련 규제의 경우 그 대상 범위가 넓고 다양해, 개정안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⁶⁾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기존규제 자체 정비 권한과 개정안에 따른 생명·안전·환

5)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 환경 관련 규제 완화로 보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할까?

경 규제 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상호 충돌할 수 있으므로, 두 조문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무조정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생명 및 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규제심사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환경 보호’ 관련 규제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대부분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어 체계적·효과적인 분석 및 규제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